

314
322.8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 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周 邊 環 境 與 件

韓 · 日 大 陸 棚 共 同 開 發 과 國 際 法 上 의 諸 問 題

— 특히 中共의 領有權主張과 關聯하여 —

研究執筆責任 裴 載 湜

(略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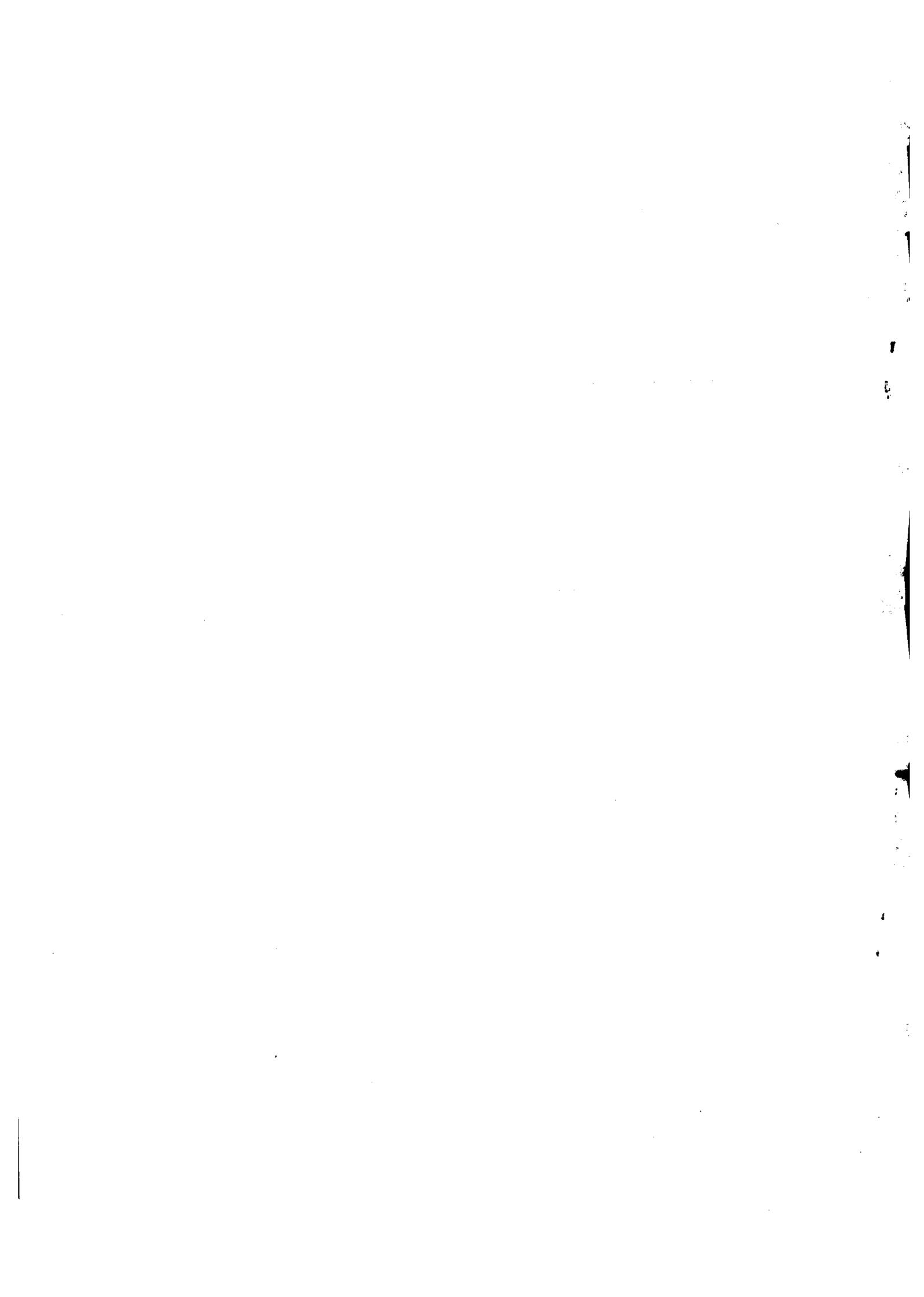
MLL ✓

- 서울大 法大卒 (1949入學)
- 하바드大 招請教授 (1960年)
- 서울大에서 博士學位 (1969年)
- 서울大 法大教授 (現在)
- 海洋法 對策委 諮問委員 (現在)

Handwritten notes and stamps in the right mar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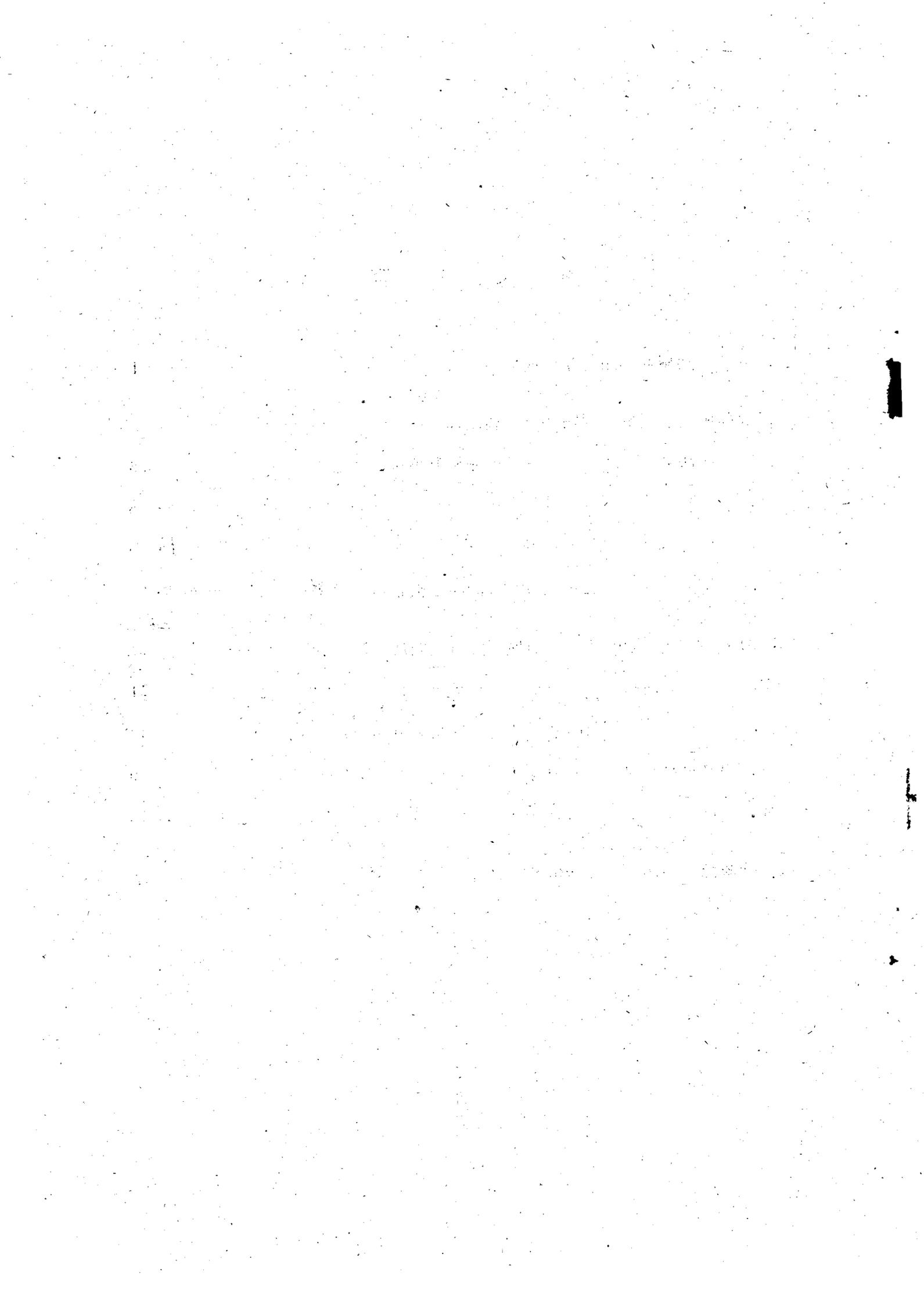
刊行責任 鄭 大 圭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 土 統 一 院 政 策 企 劃 室



論 文 內 容

一.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成立의 背景	1
二. 大陸棚에 관한 國際法의 諸問題	5
1. 海洋法會議의 動向 - 大陸棚制度를 中心으로	5
2. 大陸棚의 法的概念의 變化	8
3. 제네바條約上의 大陸棚	9
4. 大陸棚制度에 관한 第3次海洋法會議의 草案等	12
三. 韓日大陸棚共同開發과 境界劃定의 問題	21
1. 一般的 問題	21
2. 日本國과의 共同開發 및 境界劃定의 問題	22
3. 男女群島 및 鳥島의 法的 地位	29
4. 中国(中共 및 自由中国)과의 問題	32
四. 結論的 要約 - 政策的 意見	37



一.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 成立의 背景

工業立國을 指向하여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現代産業의 基本적 要素인 石油에너지 需要의 非약적인 增大를 背景으로 하여, 특히 60年代後半 이래 陸地뿐만 아니라 周辺 大陸棚石油資源開發에 박차를 加하고 있음은 다 아는바와 같다. 현재 原油의 100%를 海外로부터의 수입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石油資源을 開發하는 일은 國力의 기반을 닦는 작업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緊要한 當面의 國家的 課業이 아닐수 없다.

이같은 사정을 背景으로 政府는 近來 大陸棚에 대한 世界的인 關心(특히 우리나라와 對向하고 있는 日本과 中國의 注視)속에서 66년부터 周辺 大陸棚의 石油資源開發을 위한 探鉍基礎調査를 행하고 69년에는 西南海地域에 7개의 鉍區를 설정했으며, 다음 해에는 「海底鉍物資源開發法」을 制定, 施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一聯의 措置에 대해서 日本政府와 中國을 事實上 代表하고 있는 中共當局(및 우리나라와의 關係에 있어서 中國을 法的으로 代表하는 自由中國政府)는 各各 異議와 抗議를 거듭 提起해 왔다.

그것은 韓國이 設定한 西南海의 海底鉍區는 日本 및 中國과의 接統(同一)大陸棚의 境界를 이루는 것으로서, 隣接大陸棚의 境界는 原則으로 關係沿岸國과의 合意에 의해서 劃定되어야 함에도 韓國이 그것을 一方的으로 設定한 것은 不當하며 또한 不法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同 海域에 있어서의 3國의 利害關係는 심각하게 얽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韓·日兩國間에는 大陸棚境界에 관한 紛爭이 정식으로 提起되었던 것이다.¹⁾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3年余의 交渉끝에, 두 가지의 協定, 즉, 「大韓民國과 日本國 間의 兩國에 隣接하는 大陸棚의 北部境界 劃定에 관한 協定」 및 「大韓民國과 日本國 間의 兩國에 隣接하는 大陸棚의 南部의 共同開發에 관한 協定」을 체결하기로 合意하므로써 그 紛爭은 일단 妥結된 셈이나, 共同開發의 대상으로 設定된 南部大陸棚에 대한 兩國의 管轄權은 50年間 留保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地域에 있어서의 兩國間의 境界問題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이 두 協定은 1974年 1月 30日 서울에서 署名되었으나 그 후 4年余 동안의 于余曲折—中共의 抗議, 日本國內 政治事情(野党的 反對), 그리고 第3次 海洋法會議의 動向注視등 일본의 批准遲延— 끝에 지난 6월에 드디어 그 効力이 발생하였다.²⁾

그런데, 上記 韓日大陸棚協定の 署名이 있는 후 數日이 지난 74年 2月 5日에 中共當局은 後述과 같이, 韓·日 兩國이 東支那海 大陸棚을 共同으로 開發할것에 合意한데 대하여 強硬한 抗議를 제기하면서 「共同開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結果에 대해서는 日本과 南朝鮮當局이 全的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自由中國政府는 同年 2月 14日 聲明을 발표하여 최근 韓, 日, 中共間에 문제가 되고 있는 同地域의 大陸棚은 中華民國에 屬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自國의, 모든 權利를 留保한다고 言

明하였다. 中共当局은 또한 지난 6月 26日, 韓日大陸棚協定の 效力發生을 보고 다시 강경한 내용의 聲明을 發表하고, 韓日協定은 中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抗議하였다.

이와같이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 周邊의 大陸棚開發의 문제는 國際的 關心과 注目の 대상으로 登場하고 있는데, 특히 西南海底地域에는 韓, 日, 中(사실상 두개의 中國) 3國의 利害關係가 복잡하게 交錯하고 있어서 關係國間의 大陸棚境界劃定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아가 그것은 중대한 國際紛爭으로 惡化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³⁾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美國務省은 1971年 3月 2日에 紛糾가 일어나고 있는 地域의 海底開發事業에 美國의 石油會社들이 참여하는 것을 삼가토록 忠告한바 있으며, 그것에 따라 韓國政府와의 契約에 의하여 西海에서 作業하고 있던 美國 會社들이 撤收해 가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北韓傀儡集團이 中共과 合作하여 介入하는 경우 — 그들은 이 韓日大陸棚協定締結을 신랄하게 非難하는 성명을 낸바 있고, 또한 中共当局은 그 이전의 聲明에서 西南海大陸棚開發에는 北韓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므로 —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 더욱기 韓日大陸棚共同開發이 좋은 結果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北傀集團은 中共과 合勢하여 온갖 策動을 다 부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本稿는 우리나라의 大陸棚鉤區(隣接對岸國과의 境界)設定과 그 海底開發에 따르는 法的 問題와 그것이 關

係國과의 紛争으로 提起되어 현실로 그 해결이 要求되는 경우에 對備하는 方案으로서 특히 大陸棚의 범위 및 境界에 관한 國際法 上의 問題에 關해서 考察하는 것을 主된 目的으로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周邊大陸棚에 대한 우리의 權利와 利益을 確保하기 爲해서 필요한 일이며, 동시에 그것은 東北亞地域이 平和에 기여하는 하나의 方法이기도 할 것이다.

二. 大陸棚에 관한 國際法の 諸問題

1. 海洋法會議의 動向

최근의 第7會期에 이르기까지의 6年동안(준비期間을 합치면 12年동안) 계속되고 있는 第3次 UN 海洋法會議는 近来 이른바 資源民族主義가 팽배한 가운데 海洋資源의 配分과 管轄, 그리고 國家의 安全保障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海洋法秩序의 定立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로 現代 國際法の 최대의 課題의 하나를 다루고 있는 今世紀에 있어서의 最大規模의 國際立法會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第3次 海洋法會議는 歷史적으로 劃期的 重要性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會議의 進展과 結果는 모든 國家의 至大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國家의 安保가 그 어느때보다도 絶실히 要求되고 있으며 또한 海洋-水産의 영역에서 世界的으로 躍進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重大한 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다.

最近에 이르기까지 在來의 海洋秩序는 數世紀동안 대체로 國際慣習法에 의해서 規律되어 왔으며, 그 전통적 慣習法은 主로 海洋大國들의 慣行을 기초로 하여 成立한 것이었다. 第2次世界大戰 후 海洋에 대한 人類의 關心이 增大함에 따라 전통적인 海洋法制度에 挑戰하고 있는 非西歐的인 新興勢力에 의해서 이른바 「海洋法の 危機」가 造成되고 마침내 海洋秩序의 混亂이 전개됨에 이르러 그것에 관한 全面的인 檢討와 調整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양에 관한 재래의 慣習法規를 全体的으로 정비하여 法典化하려는 최초의 作業이 1958年 國際聯合이 主擧한 第1次 海洋法會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會議에서 「大陸棚에 관한 協約」을 포함하여 4개의 法典이 成立하였는데, 이 條約들은 海洋法規의 成文化를 통한 國際法の 積極적 발달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論難되었던 많은 문제(특히 領海의 범위)를 妥結하지 못한채 남겨 놓았다. 그리하여 同會議는 未解決의 課題들을 討議하고 審議하기 위한 第2次 海洋法會議의 開催를 요청하는 決議도 아울러 채택하였다. 그 후 1960年에 第2次 海洋法會議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주로 宿題로 남겨 놓았던 領海의 범위와 排他的 漁業水域에 관한 「콘센서스」에 도달할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大多數의 支持를 받은 美國(및 캐나다)案 — 領海 6海里와 6海里의 排他的 漁業水域을 내용으로 한 것 — 이 1票의 不足으로 결국 採択되지 못하므로써 그 문제는 여전히 未定으로 남겨 놓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第1次 및 第2次 UN 海洋法會議는 대체로 海洋에 관한 傳統慣習法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 部分的인 修正과 약간의 새로운 要素를 加味한 海洋法の 法典化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계속되고 있는 第3次 海洋法會議는 數世紀동안 海洋을 規律해 온 傳統的인 諸原則과 規則을 改定 또는 補充하는 作業이 아니라 그것들을 全面的으로 改革하여 새로운 次元의 海洋法秩序를 定立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海洋法의 背景을 이루는 중요한 要因의 하나는 大陸棚의 重要性의 增大이다. 오늘날 世界的으로 石油와 가스에 대한 需要는 날로 增加하고 있어 그 資源을 찾아 沿岸으로부터 점점 깊은 海底로 나아가 마침내 深海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最近의 비약적인 科學, 技術의 발달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海洋活動(海底探査, 開發, 漁撈 등)은 대부분 大陸棚에 集中되고 있음은 周知하는바와 같다. 大陸棚의 地質學的 形狀은 一定하지 않으나 水深 5000 m, 幅 數百海里에 달하는 것도 있어 前記 大陸棚協約(1958, 제네바)이 規定하는 大陸棚의 定義와는 먼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大多數의 沿岸國은 大陸緣辺(Continental margin)⁴⁾을 갖고 있는데, 그 緣辺은 總海底의 25%에 不過하나, 이 大陸緣辺의 重要性은 대단히 크며, 특히 大陸棚과 그 斜面의 重要性은 더욱 더 하다. 그리고 漁類의 약 80%는 大陸緣辺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石油資源의 대부분도 이 緣辺안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軍事的 音響施設 기타의 金屬物도 이 大陸緣辺에 숨겨져 있고 보면 이 海底에 관한 國際紛爭이 점차 더 해 갈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⁵⁾ 이리하여, 後述하는바와 같이, 오늘날 生成過程에 있는 새로운 海洋法上의 大陸棚의 概念은 地學上의 概念과는 달리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으로서의 大陸緣辺의 外端까지, 또는 그것이 拒岸 200海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深度나 海底地形에 관계없이 領海基線으로부터 200海里까지의 海底를 包含하는 것으로

擴大되고 있다. 6)

2. 大陸棚의 法的 概念의 變化

大陸棚 (continental shelf) 이라는 것은 본래 地質學上的 概念으로서, 7) 海底는 沿岸으로부터 완만하게 점점 깊어가다가 水深 약 200 m의 地點에서 急傾斜로 떨어지는데, 이곳까지의 海底를 大陸棚이라고 한다. 그리고 地質學上的 「大陸斜面」 (continental slope) 이 大陸棚의 「棚端」 (Shelf edge) 에서 시작되는데, 이 斜面이 終端의 水深은 대략 1500 ~ 4000 m이다. 다시 大陸斜面의 終端에서 「大陸隆起(台)」 (continental rise) 가 시작되는데 이 隆起(台)의 最終深度는 4000 ~ 5000 m에 이른다. 이 보다 더 깊은 海底는 深海底라 하여 大陸棚과는 다른 法制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상의 「大陸棚」, 「大陸斜面」 및 「大陸隆起(台)」의 3者를 合하여 「大陸緣辺」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沿岸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으로 보고 따라서 거기에는 沿岸國이 主權的 權利가 미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一般的 見解이며, 또한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大多數의 國家에 의하여 받아들여 지고 있음은 앞서 言及한바와 같다.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管轄權을 주장한 最初의 例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45年 9月 28日의 「大陸棚의 海床 및 下層土의 天然資源에 대한 美合州國의 政策」에 관한 大統領宣言(속칭

Trueman 宣言)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美合州国은, 公海下에 있으나 미국의 沿岸에 接統하는 大陸棚의 地下 및 海床의 天然資源이 미국에 屬하며, 그 管轄權과 管理下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데에 있다. 이 宣言을 先例로 하여 그 후 많은 나라들이 統統 隣接海洋(大陸棚포함)에 대한 管轄權 또는 主權을 주장하게 되었다(우리나라도 1952 年에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에 의하여 이른바 「平和線」 또는 日人들의 이른바 「李承晩라인」을 設定한바 있다). 이리하여 大陸棚에 관한 法制度는 各沿岸國의 個別的 措置(國內立法과 兩者條約等)에 의하여 慣行에서 점차 價値로 生成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U.N. 國際法委員會의 準備作業을 거쳐 前記 第1次 海洋法會議에서 「大陸棚에 관한 條約」이 成立하므로써 法的 概念으로서의 大陸棚의 定義가 규정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보는바와 같이, 地質學上의 概念과 一致하는 것이 아니다.

3. 제네바 條約上의 大陸棚

前述한바와 같이, 第1次 海洋法會議(제네바)에서 成立된 「大陸棚條約」 第1條에 의하면 大陸棚이란 「海岸에 隣接하고 있으나 領海 밖에 있는 海底區域의 海床과 下層土로서 上部水域의 水深이 200 m까지의 것, 또는 그 限度를 넘는 경우에는 上部水域의 水深이 海底區域의 天然資源의 開發을 可能케 하는 곳까지의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地質學上의 大陸棚의 外緣은 곳에 따라 水深을 달리하고 있으나, 同條約에서는 그러한 地質學的 概念을 떠나서 一律적으로 水深 200 m까지를 일단 大陸棚의 範圍로 하고, 또 開發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보다 더 깊은 곳도 그 沿岸國의 大陸棚으로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法的 概念으로서의 大陸棚의 범위는 地質學上의 그것보다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同條約 第2條는 「沿岸國은 大陸棚에 대하여 이를 探査하고 그 天然資源을 開發하기 위한 主權的 權利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大陸棚에 대한 國家의 排他的 權利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大陸棚의 定義에 있어서 開發可能性이라는 基準은 世界的 最高水準인지 또는 當該 沿岸國의 水準인지가 不分明할 뿐만 아니라 科學, 技術의 발달에 따라 海底資源開發이 가능한 深度가 깊어 질수록 大陸棚의 범위가 점차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最近의 最高水準의 科學技術은 水深 4000 ~ 5000 m의 海底開發이 가능하다고 한다). 後進沿岸國도 最高의 技術水準에 도달한 先進國과 用役契約, 合作 등의 方法으로 大陸棚을 開發할 수 있기 때문에 先進國과 같이 最高水準의 開發可能性을 基準으로 한 大陸棚(범위)을 要求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大陸棚 以遠에는 「深海底」가 있고 그것은 大陸棚과는 별개의 制度에 의하여 規制되어야 한다는 認識이 오늘날 一般化하고 있다. 즉, 沿岸國의 大陸棚의 範圍를 어느 限界에서 끊고, 그 以遠의 深海底의 資源開發은 大陸棚制度와는 다른 法制度下에 두어야 한다는 인식아래에서 現

在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는 이 深海底에 관한 法制度를 創設하는 作業이 進行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아래에서 開發可能性이라는 基準은 客觀的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上記 大陸棚協約은 처음 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그 成立 후 얼마 아니가서 그 것의 改定에 관한 論議가 일기시작하여 마침내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큰 修正을 받게 되었다.

大陸棚의 범위와 關聯하여 1969年의 北海大陸棚事件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 獨逸 對 덴마크, 獨逸 對 和蘭)에 대한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⁸⁾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에 의하면 同裁判所가 大陸棚을 海中에 뻗은 「陸地領土의 自然的延長」 (natural prolongation of land territory)으로 보고, 이 延長의 終端을 沿岸國의 大陸棚의 外緣이라고 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同 法院은 大陸棚이 沿岸國에 屬하는 근거를 大陸棚과 陸地와의 地學的인 一體性에 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國際司法裁判所는 大陸棚은 海中으로 뻗어난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으로 構成되어 있는 까닭으로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는 그 陸地領土에 대한 主權에 立脚하고 있다고 判示하였다.⁹⁾

이 判決을 계기로 하여 大陸棚의 法體系에 있어서의 「제네바」 大陸棚協約은 다시 한번 全面的 檢討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同 判決은 海洋科學의 발달과 함께 현재 進行中에 있는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의 大陸棚制度의 審議에 결정적인 影響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大陸棚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前記

「제네바」協約 第1条는 第3次 海洋法會議가 시작될 즈음에는, 다음에 보는바와 같이, 이미 現行法으로서의 妥當性을 상실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大陸棚制度에 관한 第3次 海洋法會議의 草案

1974年 Caracus에서 개최된 第3次 海洋法會議 第2會期中 第2委員會가 作成한 「作業文書」에서도 이미 제네바協約의 200m水深基準이나 開發可能性의 基準은 찾아 볼수가 없었다. 同文書 第68条 Formula A.B.C.D. 및 第81条 E.F.G.H.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提示하고 있다.¹⁰⁾

첫째, 大陸棚의 外的 限界(範圍)를 大陸隆起(台)의 外緣까지로 하는 基準, 둘째, 大陸棚의 外的 限界를 排他的 經濟水域(200海里)의 범위와 같이 하되, 200海里를 넘는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部分도 大陸棚으로 인정하는 기준, 셋째, 大陸棚의 外的 限界를 大陸緣邊(margin) 또는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까지로 하는 基準, 넷째, 大陸棚의 外的 限界를 水深 500m까지로 하되 200海里的 經濟水域制度和 절충하는 기준등이다.

이와같은 여러가지의 아이디어는 前述한 U.N 海底委員會로부터 Caracus의 第2會期에 이르는 동안에 生成한 새로운 大陸棚制度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潮流에서 派生된 것이다.

그 하나는 아프리카諸國이 中心이 되어 주장한 것으로서 海底

및 그 資源에 대하여 沿岸國의 權利가 미치는 범위는 距岸 200 海里까지로 하고, 그 上部水域에 대한 權利와 아울러 大陸棚制度를 經濟水域의 法制度속에 包含시키자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만약 보다 넓은 범위의 大陸棚을 인정한다면 國際海底의 범위가 좁아지고 그것으로부터의 收益이 減少되어 이른바 「人類의 共同遺産」의 理念에 입각한 國際海底制度가 無實한 것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 둘은 沿岸으로부터 200 海里를 넘어서 大陸塊가 自然的으로 延長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까지의 Plus alpha 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南美諸國과 넓은 大陸棚을 갖는 諸國이 주장하는 바인데, 그 주장의 根拠는 前述한 1969 年の 北海大陸棚事件에 대한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에서 明示된 自然延長論이다. 즉, 大陸棚이란 그 沿岸國의 陸地領土의 海中에의 自然的 延長으로서 이같은 海底地域에 대해서 沿岸國은 앞으로 權利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現行國際法上 이미 既得權으로서 認定되고 있다는 것이다.¹¹⁾

이같은 두 갈래의 주장은 각각 그것을 支持하는 國家(群)의 數와 그룹으로서의 影響力이 伯仲했기에 그 귀추를 豫斷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와같은 背景下에서 맞이한 1975 年の 第3 會期(제네바)에 있어서는 200 海里까지를 大陸棚의 범위로 한다는 主張보다도 自然的 延長部分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는 主張이 有力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自然的 延長論은 條件附로서 200 海里를 넘는 大陸棚에 있어서는 그곳의 開發에서 얻어지는 收益을 沿岸國이

独占하는 것이 아니고 一定한 率에 따라 國際機關을 통해서 他에 配分한다는 方式(이른바 revenue sharing system)인데, 그것은 바로 200海里範圍의 立法論과의 妥協으로서 考案된 것이었다.¹²⁾ 그리하여 第3會期에서 作成, 配布된 非公式 單一交涉草案 第2部の 大陸棚에 관한 規定은 이것을 反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同 草案 第62條는 大陸棚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沿岸國의 大陸棚은 그 國家의 領海를 넘어 그 陸地 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통해서 大陸緣辺(margin)의 外端까지의 海底區域의 海床 및 下層土, 또는 大陸緣辺의 外端이 領海의 測定基線으로부터 200海里의 距離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200海里까지의 海底區域의 海床 및 下層土로 構成된다」

이와같은 大陸棚의 定義는 그후 第5會期(New York)에서 作成된 改訂單一交涉草案(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이나 第6會期(New York)에서 作成된 最近의 非公式 統合草案에도 修正없이 그대로 채택되고 있다.

이들 草案의 規定은 한결같이 法的인 概念의 大陸棚을 「大陸緣辺의 外端까지의 海底區域 또는 大陸緣辺이 200海里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200海里에 이르는 海底地區의 海床 및 下層土」라고 定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본 「제네바」 大陸棚協約上의 定義에 比해서 훨씬 넓은 범위의 大陸棚을 採択했을뿐만 아니라 「大陸緣辺과 200海里」라는 二元的 基準을 채용하므로써 大陸棚의 概念을 混亂케 하고 있다. 특히 200海里基準은 — 물론 좁은 大陸棚을

가진 나라들과 無沿岸國들의 要求와의 妥協的 產物이기는 하나—
地質學的 概念의 大陸棚과의 一體性 내지 關聯性(大陸棚의 實質的
要素)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大陸棚과 深海底와의 區
別을 不可能하게 하는 것이다.¹³⁾ 要컨데, 大陸棚의 定義에 관한
新, 舊 및 統合草案의 同一한 規定內容은 「좁은 大陸棚」과 「넓
은 大陸棚」을 둘러싼 論爭¹⁴⁾을 거쳐 결국은 大陸棚의 地質學
的 概念에 拘碍됨이 없이 「넓은 大陸棚」의 採択으로 歸結(妥協)
된 것이다.

그런데, 大陸緣邊의 外端까지를 大陸棚의 범위로 認定한다는 것은
海底地質의 構造上 沿岸國의 陸地領土와의 關聯性을 證明할 수 있
는 最大限의 범위를 設定하여 沿岸國의 大陸棚에 대한 管轄權의
範圍를 될수 있는대로 擴大하려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¹⁵⁾
동시에 200海里 距離基準을 併用하고 있는 上記 草案의 體制下에
서는 두 가지 基準 가운데 어느 것이 優先적으로 適用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提起될 수 있다. 草案의 規定은 大陸緣邊의 外
端까지, 「또는」…… 200海里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兩基準이 選
択적으로 適用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韓·日
間의 大陸棚의 경우 同一한 海底地域에서 두 가지의 基準이 衝突
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그 中 어느것이 優先하는가를 규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 問題에 관해서는 다음 章에서 再論할 것이
지만, 同 草案의 立法趣旨, 規定의 文脈, 大陸棚의 地質學的(實質的)
關聯性 등으로 보아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에 基礎를 둔 海陸緣

辺基準이 優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現在 계속되고 있는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作成된 세 가지의 草案이 規定하고 있는 大陸棚의 새로운 定義에 관해서 살펴 보았다. 말할 것도 없이 同會議에서 交渉의 基礎로서 提示된 同 草案들은 그 自体로서 法的 効力を 갖는 文書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規定內容은 7 會期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會議의 進行속에서 表明된 大多數의 意見을 集約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成立될 大陸棚法의 骨子로서, 또한 그 制度의 礎石으로서의 地位를 굳히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草案들의 規定內容은 한편으로 최근의 海洋法秩序의 混沌속에서 急速히 生成되고 있는 새로운 海洋慣習法의 추세와 動向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물론, 前述한바와 같이, 草案들의 規定內容에 問題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批判과 修正提案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大陸緣邊을 基準으로 하는 경우에도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狀態를 明確히 하는 일, 그리고 大陸緣邊의 外端을 구체적으로 劃定하는 일 등은 地質學 내지 高度의 技術的인 性質의 問題로서 專問的인 精密한 研究가 따라야 할 것이다. 17)

이같은 問題와 關聯하여 「아이랜드」, 「카나다」, 일본등의 修正案이 나왔으며, 最近의 會期(第7 會期 總會會議)에서는 소련의 300 海里案도 나와 있다.

이른바 Irish formula 라고 하는 「아이랜드」修正案 第4項에 의하면, 領海測定基線으로부터 200海里를 넘는 大陸棚의 外的 限界는 상호간의 거리가 60海里를 넘지 않는 大陸隆起(台)上的 fixed points를 서로 連結한 直線에 의하여 表示하되, 각각의 fixed points에 있어서의 堆積岩의 두께(the thickness of sedimentary rocks)가 大陸斜面的 最下部(foot)로부터 그 fixed points까지의 最短距離의 最少限 1%가 되도록 fixed point를 設定하는 方式을 提示하고 있다.¹⁸⁾ 同 第5項은 The Continental Shelf Boundary Commission의 設置를 提案하고 있으며, 끝으로 第7項은 同修正提案이 2國 以上の 大陸棚境界劃定에는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Canada의 修正提案(Informal Proposal)은 「大陸棚限界委員會」(Continental Shelf Boundary Commission)의 設置를 提案한 것인데, 이것은 問題의 大陸緣辺外端을 明確히 劃定하는 方法을 提示한 것은 아니다.

日本國의 修正案은 大陸緣辺의 限界는 大陸地殼(Continental Crust)과 大洋地殼(Oceanic Crust)의 境界로 하자는 內容인바, 일본은 前記 아이랜드修正案인 堆積岩의 두께에 따라 大陸緣辺의 限界를 定하는 이른바 堆積岩基準은 그 科學的 근거가 희박하다는 理由로 反對하면서 大陸地殼과 大洋地殼을 境界로 하는 深海底의 限界를 大陸緣辺으로 하자고 提案한 것이다.

上記 세 가지의 修正案가운데 아이랜드案이 지금까지 提議된 修

正案中에서 가장 구체적 妥当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多數의 支持를 얻어 公認案에 도달할 可望이 짝으므로 19)

Irish Formula에 의해서 大陸緣辺의 限界가 규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 진다. 20) 前記 소련의 300海里案은 거의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別로 檢討할만한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21)

다음에는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관한 統合草案의 規定內容을 概觀하고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第3次 海洋法會議의 第6會期에서 配布된 最近의 非公式 統合草案의 第83條는 「隣接 또는 對向하고 있는 國家間의 大陸棚의 境界」에 관한 條項으로서 그 規定內容은 以前의 改訂單一交涉草案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먼저 同條 第1項은 境界劃定の 準則으로서 「隣接 또는 對向하고 있는 國家間의 大陸棚의 境界劃定은 衡平의 原則에 따라, 적당한 경우에는 中間線 또는 等距離線을 採用하고, 또한 모든 關聯事情을 고려하여 合意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있어서 當事國이 따라야 할 必須的 要件은 첫째로, 모든 關聯事情을 고려할 것, 둘째로, 衡平의 原則에 따를 것, 그리고 셋째로, 合意에 依해서 行할 것 등의 세 가지로서 中間線 또는 等距離線의 採用은 「適當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必須的 要件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같은 規定內容은 「제네바」 大陸棚協約 第6條의 規定을 前記 北海大陸棚事件에 대한 國際司法裁判所의 判示에 따라 修正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中間線 및 等距離線이 抽象的 次元에서는 일단 公正한 方式임에도 불구하고 具體的 適用에 있어서 때로는 顯著한 偏頗的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前記 大陸棚事件에서 實證되었으며, 統合草案의 同條項에 규정되어 있는 準則도 前記 判決에서 判示된 基準이 法典化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同條 第2項은 「상당한 期間內에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合意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當事國은 第XV部(紛爭解決)에 規定되어 있는 節次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內容은 「제네바」協約의 規定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同協約(第6條)에서는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對岸國間의 경우에는 中間線, 隣接國間의 경우에는 等距離線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第2項의 紛爭解決節次를 前提로 하여 同條 3項은 「合意 또는 해결에 도달할 때까지의 동안, 關係國은 第1項의 規定을 考慮에 넣어 暫定的 約定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暫定的 約定(Provisional Arrangements)에 관해서는 批判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즉, 前記 第1項을 準則으로 했어도 合意에 도달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紛爭이 提起되게 되었는데, 暫定措置라고는 하나 第1項의 規定을 考慮에 넣어 約定, 즉 合意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循環論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暫定措置條項(改訂單一交渉草案 第71條 3項으로 旧草案을 改訂, 現統合草案은 그것을 그대로 規定하고 있음)에 대해서

Aguilar 委員長은 改訂草案의 序文 (第12項)에서 다음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즉, 이 會議에 있어서는 境界線劃定에 관한 紛爭의 해결을 위하여 強制管轄節次를 採択할 수 없을 것이므로, 中間的 解決로서 中間線 또는 等距離線의 方式에 言及했다고 해도 合意를 促求한다는 確실한 結果를 가져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方式에 言及했다고 하더라도 第1項이 규정하는 本來의 主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역시 中間的 解決이 必要하다는 것은 分明하다. 自身의 意見으로서 第1項의 原則에 보다 密接히 聯結된 形式으로 第3項의 文言을 提案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作成, 配布된 草案들의 規定內容을 통해서 새로운 大陸棚의 法的概念과 範圍, 그리고 境界劃定에 관해서 살펴 보고 아울러 主要한 問題點을 지적해 보았다. 이 이외에도 앞서 言及한 收益配分 (revenue sharing)에 관한 重要한 問題가 있으나, 그것은 우리나라와 直接으로 關係되는 事項이 아니므로 (즉, 우리나라는 拒岸 200海里를 넘는 大陸棚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論及하지 않기로 한다.

三. 韓日大陸棚共同開發과 境界劃定の 問題

1. 一般의 問題

現代的 工業國으로의 發展을 指標로 하여 高度의 經濟成長을 持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當面課題中에서 現代産業의 基本적 要素로서 石油資源의 確保와 그 開發이 무엇보다도 緊要한 課業임은 앞서 序論에서 強調한바와 같다. 1969年 ECAFE 산하의 the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Taiwan Offshore Area 에서 발표한 報告書에 따르면 台灣과 日本사이의 大陸棚에는 世界에서 屈指의 油田이 존재할 可能性이 있으며, 또한 黃海大陸棚에도 제 2의 埋藏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²²⁾ 이같은 情報에 따라 韓國 政府는 1969年에 7개의 鉦區를 設定하고 1970年에는 海底鉦物資源開發法을 制定하여 外國会社와의 契約下에 그 探查作業에 착수하여 現在 進行中에 있다.

그런데, 周知하는바와 같이, 韓國은 日本, 中國本土 및 台灣과 對向하고 있어 그 大陸棚은 對岸國의 그것과 接續하고 있는바, 同地域 大陸棚의 石油埋藏可能性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까닭에 그 地域의 境界劃定에 관하여 關係 對岸國間에 이미 紛爭이 提起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그 解決을 위한 어려운 問題가 제기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大陸棚의 構造를 보면 東海에

單一大陸棚이 形成되어 있고, 西南海는 일본, 中国本土 및 台湾과 对向 (또는 北韓地域과 中共治下の 滿洲地域은 隣接) 하고 있다. 東海는 西·南海에 비해서 地質學上的 大陸棚의 面積이 陝少하나 大陸斜面이 발달되어 있다. 西海의 大陸棚은 平均水深 80 m로 中国本土 沿岸까지 連續된 地域으로서 특히 第3紀層의 分布面積이 넓어²³⁾ 石油資源埋藏可能性이 많은 곳이므로 그곳에 대한 中国 (自由中国 및 特히 中共)의 関心은 대단히 높아,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의 西海鉤區設定에 대해서 一聯의 異議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한국과 日本 및 中国과의 大陸棚境界劃定問題를 각각 나누어 보기로 한다.

2. 日本과의 大陸棚共同開發 및 境界劃定問題

前記한 우리나라의 大陸棚鉤區의 設定에 있어서 政府가 취한 基本적 立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黃海의 大陸棚은 韓·中·日 3國에 連續되어 있고 또한 全海域의 水深이 200 m以下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이 海域에서는 「中間線」方式에 의하여 境界를 劃定하고, 南海(東支那海)에 있어서는 Okinawa (沖繩)海溝가 한국과 일본의 大陸棚을 兩分(斷切)하고 있으므로 이 海域에서는 「陸地의 自然的 延長」기준에 따라 한국의 陸地領土의 自然延長이 끝나는 Okinawa 海溝로써 境界를 劃定하는 것이었다.²⁴⁾

이와같은 기본적 立法政策에 따라 한국이 구체적으로 7개의 大陸棚鉤區를 設定하려는 계획을 推進하고 있던 1969年 3월에 일본은 한국정부에 그 計劃의 내용을 —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 打診해 왔다. 동시에 일본은 韓日兩國사이에는 同一한 大陸棚이 連續되어 있는바, 對向國間의 境界劃定은 中間線으로 해야 하며, 日本領土인 「鳥島」와 「男女群島」가 兩國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으므로 韓·日間의 大陸棚境界는 濟州島를 一方으로 하고 鳥島 및 男女群島를 다른 一方으로 하는 두 섬 사이의 中間線이어야 한다는 自國의 기본적 입장(이에 따라 이미 日本은 海底鉤區를 設定)을 밝혀 왔다.

한국정부는 그 기본 계획에 따라 豫定대로 1970年 1月 1日 「海底鉤物資源開發法」을 公布하였으며, 同年 5月 30日에는 同法 施行令을 公布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르러 日本政府는 同年 6月 19日附 Aide Memore를 통해서 韓·日 間의 大陸棚境界劃定을 위한 兩國의 協議를 提議해 왔던 것이다. 이 協議에 있어서의 日本國의 기본적 입장은 첫째, 兩國間에 重復되는 大陸棚의 境界線은 兩國間의 合意에 의하여 決定하고, 둘째, 特別한 事情이 없는限 境界線은 原則으로 中間線으로 할 것이며, 셋째, 이러한 경우 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충분히 尊重할 것이며, 넷째, 最終적으로는 兩國間에 大陸棚에 관한 協定의 체결을 希望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事情아래에서 兩國間에 交涉이 始作되었으나 兩國은 各自國의 입장만을 지키려 하였을뿐 좀체로 合意에 接近하지 못했다. 25)

그 후 1972年の 第6次 韓日閣僚會談에서 兩國은 兩國의 管轄權이 重複되는 海域의 大陸棚(第5, 6 鉦區의 一部 및 第7 鉦區의 全部)을 共同開發하는데에 原則으로 合意하므로서 새로운 轉機가 마련되었다. 이 合意에 의거하여 9次에 이르는 實務會談을 거쳐 1974年 1月 31日 兩國은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隣接하는 大陸棚의 北部區域의 境界劃定에 관한 協定」 및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隣接하는 大陸棚의 南部區域의 共同開發에 관한 協定」에 署名하였다. 이 두 協定은 그 후 오랜 동안의 于余 曲折 끝에 드디어 지난 6月 22日에 發効하였다. 그러나, 南部區域의 共同開發協定은 同地域에 대한 兩國의 管轄權(境界線劃定の 문제)은 向後 50年間 留保한 채 — 妥協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 共同으로 開發, 分配한다는 데에 合意했을 뿐이다. 따라서 同地域에 대한 管轄權의 문제는 如前히 남아 있으며, 더욱이 開發結果에 따라서는 보다 더 심각한 紛爭으로 提起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韓日間의 南部地域의 大陸棚境界問題는 앞으로의 宿題로서 研究, 對備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 問題의 所在

위에서 본바와 같이, 現在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隣接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있어서 問題가 된, 그리고 될 곳은 南部의 大陸棚區域(註 26의 附圖)이다. 北部區域에 관해서는 이미 上記 境界協定에 의하여 合意가 이루어 졌으므로 別로 問題될 것이 없다. 南部區域의 境界에 관해서 兩國間에 表明된 가장 큰 문제는

Okinawa 海溝의 法的 地位에 있다. 즉, 同 海溝가 兩國間의 大陸棚의 自然的 延長을 斷切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또 하나의 問題는 兩國間의 大陸棚上에 存在하고 있는 鳥島 및 男女群島의 法的地位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있다.

(2) Okinawa 海溝의 法的地位와 200 海里基準의 適用

「제네바」大陸棚協約 第 6 條에 의하면 境界劃定の 대상이 되는 大陸棚은 「2 또는 그 以上の 國家에 隣接하고 있는 同一한 大陸棚 (the Same Continental Shelf)」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問題가 되는 大陸棚이 關係 當事國들의 領土에 隣接해 있어서 (즉, 自然的 延長을 구성하고 있어서) 어느 國家도 自國의 陸地 領土에 대한 主權에 근거를 두고 있는 大陸棚에 대한 主權的 權利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제의 大陸棚은 關係當事國의 管轄權이 미치는 大陸棚의 範圍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어느 國家도 大陸棚의 範圍 (外的限界) 를 벗어나는 海底地域에 대해서 主權的 權利 또는 管轄權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自然的 延長에 立脚한 大陸緣辺基準과 아울러 200 海里 距離基準을 採用하는 경우 (前記 統合草案 및 以前의 旧草案들에 依拠하는 경우) 에는 問題의 大陸棚이 關係沿岸國 모두의 自然的 延長으로 構成된 同一 大陸棚이 아닌 경우에도 關係當事國間에 境界線劃定の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다음에 보는바와 같이, 韓日 間의 南部大陸棚地域의 境界劃定에 있어서 日本이 앞으로 —從來에

는 Okinawa 海溝에 의하여 日本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이 斷切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의하여 문제가提起되었으나— 200海里基準을 援用하여 中間線에 의한 境界劃定을 企圖할 可能性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自然延長基準과 200海里基準 가운데 어느 것이 優先적으로 適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提起된다.

먼저, 문제의 Okinawa 海溝의 法的地位에 관해서 考察하고, 그 다음에 200海里基準의 適用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우선, Okinawa 海溝가 日本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으로서의 大陸棚의 外的限界를 지우는 것이라면 日本은 同地域의 大陸棚에 대해서 그 主權의 權利를 要求할 근거가 없게 되며, 따라서 그 地域에는 兩國間에 重復되는 大陸棚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境界劃定의 문제는提起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韓國側の 立場은 同海溝가 兩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斷切하고 있으므로 兩國의 大陸棚의 外的 限界(범위)는 同海溝에 의해서 자연히(地形的으로) 지워진다고 보는 것인데 대하여, 日本側の 立場은 Okinawa 海溝에 의하여 日本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이 斷切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兩國間的 隣接大陸棚의 境界는 中間線에 의해서 劃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7)

大陸棚의 構成에 있어서 海溝가 어떠한 地位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一般的 原則이 존재 않는다고 할 것이다. 몇 가지의 先例를 보면, 1965年의 英國과 挪웨이, 1968年의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間의 境界劃定은 海溝를 無視하고 中間線으로 境界를 劃定한

事例이다. 그러나 前者의 경우, 엄격한 法的 原理에 依한 것이라
기 보다는 兩國間의 政治的 妥協의 結果로 보는 견해가 有力하다. 28) 、
後者は 兩國間에 있는 海溝가 兩國沿岸으로부터 同一한 거리에 있
고 幅이 좁아 同海溝로 因하여 兩國에 歸屬되는 大陸棚의 面積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海溝를 무시하고 中間線에 의하여 境界를
劃定한 것으로서, 이 先例는 Okinawa 海溝문제에 援用될 余地가
없는것 같다. 29) 또한 濠洲와 인도네시아間의 境界劃定事例를 보면
「티모르」海溝의 濠洲쪽 600 ft 等深線을 境界로 劃定하므로써
海溝의 存在는 「特別한 事情」을 構成한다는 先例를 남기고 있다. 30)

그리고, 前記한 北海大陸棚事件에 대한 判決에서 國際司法裁判所는
「어느 海底區域이 沿岸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構成하지
않는 경우에는 設使 그 地域이 他國의 領土보다 그 國家의 陸地
領土에 더 近接해 있는 경우에도 그 沿岸國에 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고, 例를 들면 Norway 海溝에 의하여 斷切되어
있는 北海의 大陸棚地域은 地學的 意味에서는 Norway에 隣接해
있다거나 또는 同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이같은 判示는 Okinawa 海溝의 문제
를 考察함에 있어 有益한 示唆를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Okinawa 海溝가 日本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斷切하는가의
문제는 地質學 또는 地形學的 調查에 의해서 규명된 일이나, 지금
까지 알려진 專問的 調查結果 31) 에 따르면 同海溝가 韓日兩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斷切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으로서의 大陸棚의 外的 限界는 同 海溝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사 그 斷切構成에 地質學上의 疑問이 있다 하더라도 海溝가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과 그 存在로 因하여 問題가 提起되고 紛爭이 發生하고 있다는 事實 自体가 적어도 「特別한 事情」(제네바協約上)을 構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中間線基準이 適用될 수 있는 「適當한 경우」(統合草案 第83條 1項)가 아님은 더욱 分明하다.

다음에는 統合草案의 200海里 거리基準이 韓日間의 南部大陸棚 地域의 境界劃定에 妥當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살펴본다. 이미 본바와 같이, 第3次 海洋法會議의 統合草案 第76條는 大陸棚의 範圍를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構成하는 大陸緣辺의 外端까지, 또는 그것이 200海里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拒岸 200海里의 海底 地域을 大陸棚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規定에 비추어 일본으로서는 — 실사 Okinawa 海溝가 自然的 延長을 斷切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 200海里 拒離基準을 援用하여 中間線을 주장할 可能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作成된 諸草案에서 한결같이 規定되고 있는 大陸棚의 概念은 基本的으로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³²⁾ 慣習法上 이미 確立된 原則임은 北海大陸棚事件에 대한 前記 判決에서 確認되고 있다. 위의 草案들의 規定은 바로 이와같은 法的認識에 立脚한 것으로서 그 文脈이나 論理的 構造를 보아서도 自然延長基準이 第1次的인 것이며,

그 延長(大陸緣辺의 外端까지)이 260海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海里까지의 海底를 —地質學的 概念의 大陸棚과의 一体性 내지 關聯性을 떠나서— 大陸棚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論한바와 같이, 넓은 大陸棚을 가진 國家들과 좁은 大陸棚을 가진 國家들과의 政治的 妥協의 産物이다.

그러므로 隣接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있어서 上記 두 가지의 基準이 兩当事國에 의해서 同時에 援用되는 경우(한국은 自然延長基準, 日本은 200海里基準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自然的延長基準이 優先적으로 適用된다고 보는 것이 順理이며 또한 그 立法趣旨에도 合當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경우에는 1國의 大陸棚이 他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侵害해서는 아니된다고 判示한 北海 大陸棚事件에 관한 判例³³⁾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日本이 200海里基準을 援用한다 하더라도, Okinawa 海溝가 兩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斷切하는 것이라면, 同海溝를 넘어선 南部大陸棚區域에 대해서 主權的 權利를 주장하는 것은 韓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侵害하는 것이 된다.

3. 男女群島 및 鳥島의 法的地位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또 하나의 問題가 될 수 있는 韓日兩國間의 大陸棚上에 位置하고 있는 日本所屬의 男女群島 및 鳥島(註 26의 圖表參照)의 海洋法上的 地位에 관한 것으로서, 同

島嶼들이 自體의 大陸棚을 가질 수 있는가 또는 大陸棚境界劃定の 基點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제네바」大陸棚協約 第1條는 島嶼도 大陸棚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等距離의 基準을 修正한 「特別한 事情」의 하나로써 섬의 存在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모든 섬이 考慮의 對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程度로써 그것을 考慮의 限界基準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明示의 規定이 없을 뿐이다.

결국, 섬의 價値(merits), 즉, 그 面積, 有用性, 數, 本土로부터의 距離 등과 같은 諸要因을 감안하여 具體的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前記 北海大陸棚事件의 判決에 있어서는 對岸 國間에서는 작은 섬, 岩礁 등의 存在를 無視하고 中間線으로 境界를 설정할 수 있다고 判示하였다. 그러나 隣接國間의 境界劃定에는 어떻게 되며, 또 어느 國家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으로서 떨어진 大陸棚上에 他國의 島嶼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서 同 判例에는 言及이 없다.

第3次 海洋法會議의 統合草案 VIII部 (Regime of Islands) 第121條는 前草案(R.S.N.T.)의 規定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즉, 그 1項에서는 섬은 陸地의 自然的 構成部分이라 하고, 2項에서는 「第3項을 除外하고, 섬의 領海, 接統水域, 排他的 經濟水域 및 大陸棚은 本 條約(草案)의 다른 陸地領土에 관한 諸規定에 따라 定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同 第3項은 「사람이 居住할 수 없거나 또는 經濟生活을 維持할 수 없는 岩礁(rocks)

는 排他的 經濟水域 또는 大陸棚을 갖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大陸棚에 관한 統合草案에는 섬에 관한 規定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러면 統合草案 第121條의 規定內容의 意味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섬은 陸地의 自然的 構成部分」이라고 한 것은 섬도 原則으로 自體의 大陸棚(및 기타)을 가질수 있다는 것을 暗示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3項을 除外하고, 「陸地領土에 관한 다른 諸規定에 따라 定해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섬의 大陸棚(및 기타)은 그 섬의 陸地로서의 價値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規定內容은 要件데, 前記한 제네바 大陸棚協約(第1條)에 관한 解釋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결국 韓日間의 大陸棚上에 存在하고 있는 同群島의 地位問題는 그 自體의 陸地로서의 Merits에 의해서 決定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³⁴⁾ 同島嶼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直徑 2마일에 不過하며, 사람이 居住하고 있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經濟生活을 維持할 수 없는 섬들로서, 要件데 陸地로서의 價値를 갖지 않는 島嶼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同群島는 韓國의 陸地領土의 自然延長위에 散在하고 있는바, 한 나라의 大陸棚上에 他國의 有用的 價値도 없는 섬이, 位置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基點으로하여, 大陸棚의 境界를 劃定한다면 그것은 衡平의 原理에 어긋나는 不當한 結果를 가져 올 것이다.

4. 中國과의 問題

韓國은 前記 「海底鉍物資源開發法」(1970)의 制定 以前인 1969年 4月에 이미 美國 Gulf 会社와 西海大陸棚의 探查, 試錐에 關하여 契約을 締結하므로서 사실상 周邇大陸棚의 開發에 着手하고 있었다. 1970年 11月 12日 서울에서 韓國, 自由中國 및 日本의 3國連絡委員會가 開催되었는데, 여기에서 一日·中間에 提起되어 있던 尖閣列島의 領有權問題에 關한 兩國間의 交渉과는 別途로 — 3國은 隣接大陸棚을 共同으로 開發하게 하는데에 合意를 보았다. 이에 대하여 同年 12月 4日의 北京放送은 韓·中·日 3國의 東支那海大陸棚資源共同開發計劃을 非難하면서 尖閣列島에 對한 中國(中共)의 領有權을 주장한바 있다. 이 非難放送은 「同開發(계획)은 中國, 朝鮮에 속하는 도서의 領有權과 海底資源 所有權을 잠시 거치하고 凍結하면서 먼저 合作開發을 하는 것으로, 거치나 凍결이란 中國, 朝鮮 兩國人民의 主權을 포기하는 것이며, 日本이 먼저 약탈하여 후에 占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同年 12月 23日에도 中共當局은 人民日報를 통해서 같은 내용의 非難을 되풀이 했으며, 같은 31日에도 「韓·日·台灣 3者는 東(支那)海水域의 深海底開發權에 關한 양해에 분망하다」고 하고, 「同開發活動은 中國(中共)의 大陸棚에서 進行中이나 中國과는 相議가 없다」, 그리고 「中國은 日本, 南朝鮮(대한민국—註)의 隣接大陸棚이 自國의 領有라고 말할수는 없는바, 그것은 日

本과 南朝鮮도 沿岸國으로서 유사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며, 그 正常化에는 이론상으로는 北韓과 같이 당연히 이와 같은 권리의 配分을 위한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그 후 1973年 3月 15日 中共當局은 外交部 代弁人을 통하여 聲明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中國 近海의 海底資源이 中國에 屬함에도 불구하고 南朝鮮(註, 대한민국)이 不法的, 一方的으로 外國會社들을 끌어 들여 이 海域의 海底資源을 奪取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黃海와 東支那海에서의 中共과 隣接國과의 管轄區域은 아직 確定된바가 없으며, 韓國의 外國石油會社 誘致와 石油資源開發活動에 대하여 中共當局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가능한 결과와 관련된 모든 權利를 留保한다고 하였다. 이 聲明에 대하여 韓國政府는 翌日 外務部 聲明을 통하여 黃海 및 東支那海의 大陸棚境界劃定問題에 관하여 「언제든지 中華人民共和國 當局과 協議할 用意가 있다」고 表明했는데, 中共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応答을 보이지 않았다.

1974年 2月 5日 中共當局은 北京放送을 통하여 韓·日 兩國이 1月 30日 署名한 大陸棚共同開發協定에 따라 東支那海 大陸棚을 共同으로 開發할것에 抗議하면서 「開發로 因해서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대해서는 日本과 南朝鮮 當局이 全적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聲明에서 中共當局은 「大陸棚은 大陸의 自然的 延長이라는 原則에 의하여 東支那海에서의 大陸棚의 境界를 어떻게 設定할 것이냐의 문제는 中國과 기타 當事國間에 協議를

통하여 決定되어야 한다」고 하여 大陸棚에 관한 中共의 기본적 입장을 밝히고, 「現在 日本政府와 南朝鮮當局이 中國을 제쳐놓고 東支那海의 大陸棚에 소위 日·韓 共同開發區域이라는 것을 專斷的으로 設定한다는 것은 中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행위」라고 非難하였다. 36)

한편, 自由中國政府는 同年 2月 14日 聲明을 발표하여 「最近 東支那海의 海底資源開發에 관한 어떤 國家들의 聲明등과 中共政權의 不法的 請求에 關하여, 中華民國政府는 東支那海를 포함하여 自國沿岸으로 부터 뻗어난 大陸棚에 대하여 自國의 모든 權利를 留保한다는 것을 斷然히 言明한다」고 하고, 「문제의 大陸棚은 中華民國에 隣接하고 있으며, 또한 1958年의 大陸棚協約에 의하여 確認되는바와 같이 同國이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이다……」라고 하였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中共政權은 中國을 사실상 代表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自由中國政府는, 우리나라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法的으로 中國을 代表하는 입장에서 다 같이 韓國의 西南海 大陸棚鉤區設定과 韓日大陸棚共同開發에 抗議하는 一聯의 聲明을 발표하였는데, 그것들이 갖는 政治的 意味 또는 意圖는 別途로 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法的인 의미, 즉, 그 抗議들이 提起하고 있는 法的 문제가 무엇인가를 分析할 필요가 있다.

위의 聲明들을 통해서 表明된 中國의 두 政權의 大陸棚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기본적으로

로 自然的 延長論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한 隣接大陸棚의 境界劃定은 關係國間의 協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입장은, 前述한 바와같이 海洋法의 基本原則으로서 일단 그 妥當性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關係國들은 同海域의 隣接大陸棚의 境界劃定에 관한 合意에 이르기 위하여 交涉(協商)에 誠實히 임할 義務가 있다(前記 國際司法裁判所의 判示).

이와같은 觀點에서 韓國은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前記 中共의 抗議에 대해서 1973年 3月 16日字 聲明을 통해서 「언제든지 中華人民共和國 當局과 協議할 用意가 있음」을 表明하므로써 그 問題의 해결(合意)을 위한 協商에 誠實히 임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밝힌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設定한 7 鈺區中 中國과의 境界劃定에서 問題가 될 수 있는 곳은 第1, 2, 3, 4 區이다. 韓國이 同地域에서 鈺區設定(中共과의 境界劃定)에 適用한 基準은 中間線인데, 이 地域은 모두 韓·中 兩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으로써 構成되어 있는 同一大陸棚인바, 따라서 이 地域에는 中間線 以外에 다른 어떤 境界線의 設定을 正當化할만한 特別한 事情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兩國의 中間線으로 境界를 劃定하는 것은 衡平의 原理에 맞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다만, 西海의 大陸棚은 黃河와 揚子江에서 흘러 나온 粘土質이 상당한 部分을 덮고 있는바, 中共當局이 大陸棚을 「大陸」의 自然延長이라는 그 獨特한 理論과 粘土를 근거로 하여 보다 넓은 大陸棚을 要求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理

論은 — 學問的 論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 「沿岸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으로서 確立된 大陸棚의 法的 概念과 맞지 않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끝으로 附言할 것은, 韓國이 一方的으로 設定한 西海大陸棚鉤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國際法上 確立된 原則에 따라 正當하게 中國과의 境界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尙向國인 中國으로서는 그 境界劃定이 1次的으로 關係國과의 合意에 의해서 決定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權利를 留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中共當局은 北韓의 利益을 아울러 代弁하는 立場에서 — 北韓當局도 韓日大陸棚共同開發을 非難하고 있으나 — 強硬한 抗議를 되풀이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능한 限 가까운 장래에 中共을 포함한 모든 關係當事國間의 合意를 통해서 同地域의 境界劃定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契機로 하여 中共과의 關係正常化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四. 結論的要約 - 政策的 意見

우리나라는 그 陸地領土가 좁고 또한 地下資源도 빈곤하다. 그러나, 한편, 그 3面은 오늘날 人類에게 남겨진 마지막의 Frontier 라고 불리우는 海洋에 둘러 쌓여 있다. 이 天然의 여건속에서 近來 우리나라는 海洋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利用, 開發하기 위한 基本政策과 그것에 따른 一聯의 措置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先進工業國으로 발전케 할 수 있는 国力의 基礎를 닦는 巨大한 事業으로서, 우리는 그 結果에 奇蹟과 같은 期待와 希冀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그 海洋을 이용, 開發하는 일, 특히 그 海底의 大陸棚資源을 開發하는데는 莫大한 資金과 高度의 科學技術을 要하므로 그것을 現在로서 우리가 單獨으로 수행해 내기에는 너무나 艱難 作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周邊 大陸棚을 開發하는데는 對岸國들과의 利害關係를 調整해야하는 어려운 法的(및 政治的)問題가 가로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韓·日·中 3國間의 大陸棚境界劃定의 問題이며 또한 그것으로 因해 발생한 紛爭 또는 앞으로 발생할 紛爭을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前記의 두 協定에 의해서 北部大陸棚境界는 國際法의 原則 및 衡平의 原理에 따라 合理的으로 劃定되었으나, 石油資源의 埋藏可能性이 높은 南部、 區域(韓日共同開發

区域)에 있어서의 兩國의 境界劃定問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區域은 中國과의 中間境界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특히 中共政權은 韓日兩國이 關係國과의 協議없이 共同開發區域을 設定한데 대해서 一聯의 強硬한 抗議를 提起해 왔음은 앞서 말한바와 같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남겨 놓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國과 그 紛爭區域을 共同開發하기로 合意(協定締結)했다는 것은 그 문제 또는 紛爭을 「解決」한 것은 아닐지라도 일단(50年間) 그것을 「解消」하는 方法으로서 가장 適當한 措置였다고 할 수 있다. 그 理由는 첫째, 法的인 觀點에서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은 1969年 國際司法裁判所가 北海大陸棚事件에서 隣接大陸棚境界에 관한 紛爭의 解決方案의 하나로서 關係國의 共同開發을 提示한 이후 그것을 따른 최초의 先例로서, 앞으로 다른 地域의 大陸棚境界紛爭의 解決(또는 解消)을 위한 하나의 Model Case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같은 協定の 締結은 前述한 海洋法會議의 統合草案 第83條 3項의 「合意」가 없는 경우 취할 것을 要求하고 있는 「暫定的措置」의 한 形式이 될 수도 있다. 둘째는, 주로 政治的인 觀點에서, 同區域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設定한 鉦區와 같이, 一方的으로 境界線을 劃定하고 더욱이 單獨으로 그곳을 開發하는 경우에는, 日本과의 關係가 惡化될 可能性이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中共政權과의 關係에 있어서 現實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 예컨대, 前越南共和國이 自國領이라고 주장한 南支那海의 「파라

설」諸島를 中共이 武力으로 占領한 것과 같은 手法으로 우리의 開發作業을 妨害함과 같은 事態—가 發生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同紛争區域에 대한 管轄權은 向後 50年間 留保하고 우선 日本國과 共同으로 그것을 開發하는 경우에는 — 여기에 대해서도 中共當局은 抗議를 거듭하고 있기는 하지만 — 그러한 우려 (中共의 威脅)는 半以上으로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開發作業의 安全을 期할 수 있는 利點이 있을 것이다.

물론, 南部大陸棚區域의 境界劃定에 관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그것에 對備하는 우리의 方案으로서 海洋法會議의 統合草案 第83條 1項의 規定속에 「自然的 延長」基準을 優先적으로 適用한다는 뜻을 明記하는 修正案을 提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충분한 理由와 根拠를 부쳐 多數의 支持를 얻기 위한 事前의 준비와 外交活動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中國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隣接大陸棚의 境界를 中間線에 의하여 劃定하는 것 (現在의 우리나라 鉤區設定)이 國際法上的 原則과 衡平의 原理에 相當하는 것으로서 法的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그 劃定에 관한 協議와 合意를 함에 있어서 두 政權中 그 어느 쪽을 相對로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 즉, 우리나라와의 關係에 있어서 中國을 法的으로 代表하는 것은 中華民國 政府인데 대해서 中共政權은 「一般的 事實上的 政府」 (general de facto government)로서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政權을 상대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政治的 내지 外交的次元에서 決定되어야 할 重大한 課題이다. 私見으로서 現在의 우리나라의 立場에 비추어 難澁한 일 이기는 하나 自由中國政府의 諒解 또는 默認 아래에서 中共政權과 交渉하는 것이 現實로 우리의 利益(紛爭의 해결 또는 豫防)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韓國과 中共과의 關係를 正常化하는데도 接近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中共政權과 協議하는 경우에는, 이미 中共當局이 주장한바와 같이, 北韓傀儡集團의 參與問題가 提起될 것은 거의 틀림 없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대한 對備策이 併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 參與를 받아 드리는 경우에는, 北韓과 우리와의 隣接大陸棚의 境界測定問題, 韓日大陸棚共同開發에 의 參與問題, 그리고 그 韓日共同開發의 結果에 따라서 그 利益配分에 參與하려는 엉뚱한 문제들이 提起될 수 있을 것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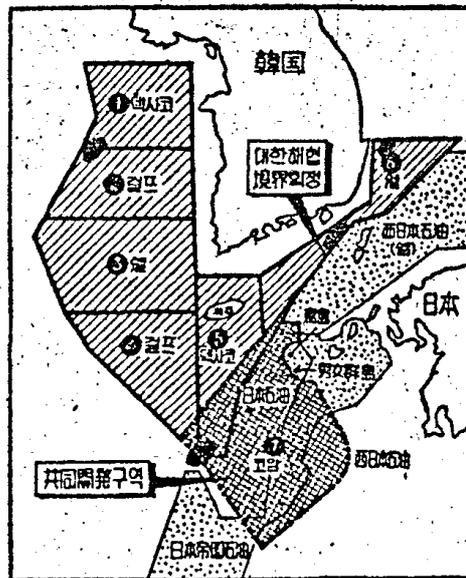
- 1) 70年 11月 12日 서울에서 開催된 韓, 日 및 自由中國의 民間團體 3國 連絡委員會는, 尖閣列島の 領有權에 관한 日·中 兩國政府間의 交渉과는 別途로, 3國이 共同으로 周邊大陸棚을 開發하는데에 暫定的으로 合意한바 있으며, 同年 12月 4日 中共當局은 北京放送을 통하여 그것을 非難하고 尖閣列島에 대한 領有權을 주장하였다. 水上干之, 「大陸棚問題」, シュリスト, №. 647, p. 61.
- 2) 최근의 報導에 따르면, 同協定發効후에도 日本側의 미온적인 態度로 인하여 당초 예정했던 來年 4~5月 試錐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中國沿岸大陸棚에 대한 日·中共의 共同開發問題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 일보, 78. 10. 24일자, 2面.
- 3) 公式的인 外交關係가 없는 韓國과 中共政權과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法上의 「紛爭」이 제기되었다고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事實上」 紛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地質學上 「大陸緣辺」은 「大陸棚」(Continental Shelf), 「大陸斜面」(Continental Slope) 및 「大陸隆起(台)」(Continental rise)로 構成되는 것인데, 118 沿岸國은 대부분 大陸緣辺을 가지고 있으나, 南北美洲의 西海岸은 例外的으로 좁은 海邊에서 바로 깊어지는 海底構造로 되어 있다.

- 5) 李漢基, 「海洋法の 新動向」,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 19 권, 第 2 号, p. 9 ~ 10.
- 6) 이와같은 새로운 大陸棚의 概念은 後述과 같이, 第 3 次 海洋法會議의 進行過程에서 配布된 非公式單一交渉草案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다음의 改訂單一交渉草案 (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그리고 最近의 非公式統合草案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등에 한결같이 規定되어 있다.
- 7) "Continental Shelf"란 用語는 英國의 地理學者 H. R. Mill 의 「The Realm of Nature」 (1862)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 8) I. C. J. Reports, 1969.
- 9) 이같은 判示中에서 同裁判所는 어느 海底區域이 沿岸國의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사 그 海底地域이 他國의 領土보다 그 沿岸國의 領土에 近接해 있는 경우에도 그 沿岸國에 附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예컨대 Norway 海溝에 의하여 斷切되어 있는 北海의 大陸棚地域은 地學上의 의미에서는 「노웨이」에 隣接해 있다거나 또는 「노웨이」領土의 自然的 延長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 10) 外務部, 第 3 次 U. N. 海洋法會議 (第 2 會期) 參考報告書 (1974), 305, 311 ~ 313 面 참조.

- 11) 上記한 北海大陸棚事件에 대한 國際司法裁判所の 判決에서 재판소는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는 ipso facto and ab initio (당연히 原初부터) 存在하는 것이며, 이것은 大陸棚에 관한 國際法의 原則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I.C.J. Reports, 1969, p.22. 이에 관련하여 R. Y. Jennings, "The Limits of Continental Shelf Jurisdiction: Some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North Sea Case Judgement", I.C.L.Q., Vol. 18 (1969), pp.821 ~ 23 참조.
- 12) 大韓商工会議所·韓國經濟研究센터, 第3次海洋法會議와 韓國經濟 (1976), 54 ~ 55 面.
- 13) 朴鍾聲, 「大陸棚制度」, 서울대학교, 法學, 제 18 권 1호 (1977-6), 306 面.
- 14) 이러한 論爭에 관해서는 L.W. Finlay,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 A Rejoinder to Prof. Louis Henkin", 64 AJIL., pp.42 ~ 61 및 Louis Henkin, "A Reply to Mr. Finlay", 64 AJIL., pp.62 ~ 72 참조.
- 15) 「大陸緣邊의 外端까지」라는 基準은, 後述하는바와 같이, 距岸距離나 水深과 같이 確然히 劃定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따라서 이준을 詳細히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
- 16) J.G. Laylin, "Emerging Customary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Lawyer, Vol.10 (1976), pp.669 ~ 81.

- 17) 第4会期の 海洋法会議が 끝날 무렵에 配布된 「改訂單一交渉草案」 第2部の 序言에서 第2委員長(Andres Aguilar M.)은 그러한 問題들을 是認하고 그 해결을 위한 몇가지의 修正提案에 同感을 表示하면서 그러한 문제는 아마도 다음 会期에서 檢討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Part 2, Text Presented by the Chairman of the Second Committee, Introductory Note 13 참조.
- 18) A Model Proposed by Dr. Robinson, Irish delegation referring to Article 64, Negotiating Group 3, at the 5th Session (Unpublished).
- 19) Selected Documents Released at the Seventh Session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held in Geneva from March 27 to May 1978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p.365.
- 20) 国防部, U.N. 海洋法會議參加報告書(第4, 5会期), p.23.
- 21) Selected Documents, op. cit., p.365 이하 참조.
- 22) CCOP, "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s of the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2 Tech. Bull., Technical Advisory Group Report, pp. 39 ~ 40 ; 大韓商工會議所刊, 前掲書, 107 ~ 8面.
- 23) 科学技術處, 大陸棚境界에 관한 調查研究(1971), 111面 참조.

- 24) 外務部, 韓日間 大陸棚 共同開發協定 및 境界線劃定協定에 관한 解説(1974), p. 86.
- 25) 그리하여 日本은 1972年 5月에 이 問題를 國際調停에 廻付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할것을 韓國側에 提議했으나 韓國정부는 消極的 태도를 보 였다는 것이다. 水上干之, 「大陸棚問題」, シュリスト, № 647 (1977. 9. 1), 64 面.
- 26) 韓國의 大陸棚(鉾區)과 日本이 주장하는 日本의 大陸棚區域과 重復되는 南部區域은 아래의 附圖와 같다.



① 한국이 주장하는 구역 ② 일본이 주장하는 구역 ③ 대한해협 해양외역

- 27) 外務部, 前掲 解説, 86 ~ 88 面.
- 28) C.H; Park, "Oil under Troubled Waters: the Northeast Asia Sea-bed Controversy",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4, № 2, p.245.
- 29) Ibid.
- 30) 韓國商工會議所刊, 前掲書, 112 面.
- 31) 韓國石油産業開發센터, 「大陸棚에 관한 一般的考察과 韓日間의 大陸棚問題」, P.I.D. Ser. № 41, 73 ~ 76 面 및 科學技術處, 「大陸棚境界에 관한 調査研究」(海底地質 및 地形學部門), 1971, 11 ~ 106 面.
- 32) 이와같이 보는데에는 異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日本의 學者들도 大陸棚의 定義에 관한 上記 草案이 自然的延長論을 採択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水上, 前掲論說, p.67; 島田征夫, 「國聯第3次海洋法會議 第6期統合草案概要」, シュリスト, № 647, p.77; 武山真行, 「大陸棚」, 法と秩序, 1976, № 4-5, p.18 참조.
- 33) I.C.J. Reports, 1969, p.53.
- 34)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터, 前掲書, 109 ~ 110 面 참조.
- 35) 영국 Guardian 紙의 John Gittings 記者의 拔萃揭載에서 引用
- 36) 1974. 2. 6 日字 各 日刊紙 1 面 上段報導.